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07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10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임신부 교통비 지원금액과 관련 “70만 원 이상”이라는 하한액 기준 입법방식보다는 “100만원 이내”라는 상한액 기준으로 수정하여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또한 거주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배제되는 지원대상을 최소화하고자 거주기간을 조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해석상 당연하여 삭제하고자 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임신부 교통비 지원금액 “70만 원 이상”을 “100만원 이내”로 수정함. (안 제4조의4제1항)
- 거주요건을 “3개월 이상”으로 수정하고, “실제 거주” 조문내용 삭제함. (안 제4조의4제1항제1호)
-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것은 해석상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함. (안 부칙 제3조 삭제)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0만 원 이상”을 “100만원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로 한다.

## 부 칙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 부칙 제3조는 삭제한다.

## 수정(제안)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u>70만 원</u>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u>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u>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u>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u>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2. 신청일 현재 임신</p>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 ----- ----- ----- ----- <u>70만 원</u> <u>이상</u>----- -----.</p> <p>1. ----- ----- ----- <u>6개월 이상</u> <u>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u> ----- ----- ----- ----- <u>6개월 이상</u> <u>계속하여 거주</u>----- ----- -----</p> <p>2. -----</p>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 ----- ----- ----- ----- <u>100만 원</u> <u>이내</u>----- -----.</p> <p>1. ----- ----- ----- <u>3개월 이상</u> <u>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u> ----- ----- ----- ----- <u>3개월 이상</u> <u>계속하여 거주</u>----- ----- -----</p> <p>2. (개정안과 같음)</p>

중이거나 출산 후 3  
개월이 경과하지 않  
은 임산부

② ~ ⑦ (생략)

----- 6

개월-----

-----

② ~ ⑦ (현행과 같  
음)

② ~ ⑦ (개정안과 같  
음)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0만 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으로, “거주하는”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u>70만 원</u>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u>주민등록</u>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u>거주하는</u>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2.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u>3개월</u>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p> <p>② ~ ⑦ (생략)</p>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  -----  -----  ----- <u>100만원</u> -----  -----.</p> <p>1. -----  ----- <u>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u>-----  -----  ----- <u>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u> -----  -----</p> <p>2. -----  ----- <u>6개월</u>-----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